



전인준
대한항공 산업안전보건실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자기규율예방체계

들어가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법 시행 전 준비기간까지 지난 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항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적용을 받게 된 것은 2018년 말부터다. 당시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위한 사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했다. 안정화를 도모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시행되고, 이에 더해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급변하는 정부정책과 법률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돌아보지 못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관한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절차 등 경영책임자의 지원 및 이행 사항의 점검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항공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였다. 해당 법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치사항 이행을 위한 기존 안전보건 조직 및 인력과는 별도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두어 경영책임자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원래 본사 소속으로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자를 운영하고 있던 팀 규모의 산업안전보건조직을 실 규모로 격상하면서 ‘산업안전보건실’로 재편하였으며, 5개 주요 현장 사업부문의 본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하고 이를 보좌하도록 안전·보건관리자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예산도 크게 증액하였으며, 매년 각 현장 사업단위별 필요 예산을 요청

받아 배정 후 전담조직을 통해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반기별 점검 후 경영책임자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회사 실정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사내 규정, 절차를 정비하였다.

법 이행 사항을 넘은 자율적 노력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층뿐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인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안전보건실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임직원의 안전의식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족·동료와 함께하는 현장 캠페인, 각종 사내공모 및 포상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보건 인식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혹서기에는 옥외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동절기에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해 위험성 및 관리 방법을 안내하면서 보건관리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공지하였다. 또한 재작년부터 사업장 곳곳에 AED를 추가 설치하고 사용 방법을 현장 근로자에게 꾸준히 교육한 결과 사고의 고비를 넘긴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밖에 아차 사고 및 유해·위험 신고, 불안전요인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활동도 전개 중이다. 창구로는 항공안전 및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Hazard Report 및 아이디어#’, 정비 현장의 위험요인을 실시간 QR코드를 통해 신고하는 ‘안전특류’ 및 승무원들의 안전 제보를 위한 ‘VOS(VOICE OF SAFETY)’ 등의 채널을 들 수 있는데, 임직원들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접수된 의견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피드백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현장의 안전보건 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소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뿐 아니라 위탁, 용역에 이르기까지 경영자의 책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항공사 특성상 도급, 위탁, 용역을 제공하는 다수의 협력업체를 보유한 대한항공 또한 적격수급업체평가, 안전보건관리비용의 관리, 작업허가 절차, 교육관리 등을 대폭 강화했으며,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협력업체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비용의 경우 협력업체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반기별 점검을 통해 보호구, 작업환경개선, 건강관리 등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현장의 안전보건 의식과 관리 수준이 많이 높아졌음을 절감한다. 하지만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업무에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러 판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다양한 우려와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부디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목적인 바대로 연착륙하여 중대재해는 물론 산업재해가 예방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